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3 호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산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 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보호 위반 시 조치) 시장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4 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명예통장단의 구성·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하 “명예통장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통장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

3.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된 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다.

⑤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명예통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산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명예통장단 추천 및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업무담당과장
- 2. 외국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명예통장 임무) 명예통장은 시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 건의 및 상황보고
- 2.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4. 시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
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명예통장의 회의) 시장은 상·하반기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5 호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6 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7.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권한의 위임)</p> <p>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삭 제></p> <p><삭 제></p> <p>6.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p> <p>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7 호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중 무연고자
-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 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甲旗) 등 장례용품
-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 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
- 5. 화장장 운구료
- 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장·통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查)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8 호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5. “동료 상담” 이라 함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료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과 의뢰
3.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4. 주택개보수
5.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6.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 및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19 호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외로움”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한다.
3.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외로움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 관련 실태조사
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치유 등에 관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상담기관 등 기관연계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지원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6. 그 밖에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① 제3조 2항에 따라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20 호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년도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산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산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전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21 호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4.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922 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61 호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조 관련)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을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 소 유 예·선 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 소 유 예·선 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 소 유 예·선 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398 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계	급	직	렬	합	계	직	공	감	자	행	기	회	세	시	열	교	정				
																		속	보	사	치
				합	계	28	12	16	203	47	33	19	31	23	18	14	18				
정 무 직 계				1					1	1											
차관(급)	소	계		1					1	1											
	정	무		1					1	1											
일 반 직 계				830		28	12	16	199	43	33	19	31	23	18	14	18				
3급	소	계		1					1	1											
	행	정		1					1	1											
4급	소	계		5					1	1											
	행	정		1					1	1											
	행 정 · 기 술		4																		
5급	소	계		35		2	1	1	8	1	1	1	1	1	1	1	1				
	행	정		15		2	1	1	7	1	1	1	1	1	1	1					
	시		실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행 정 · 시 설		7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2																		
	행 정 · 공 업 · 시 설		1																		
	행 정 · 녹 지 · 시 설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2																		
	행 정 · 보 건 · 식 품 위 생		1																		
6급	소	계		188		6	2	4	44	10	8	4	6	6	3	3	4				
	행	정		54		4	2	2	20	4	8	3			3	2					
	세		무		2					2			2								
	전		산		1					1									1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계
9급	행정·녹지		2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1																			
	행정·식품위생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5																			
	행정·방송통신		1	1	1																	
	보건·식품위생		1																			
	식품위생·위생		2																			
전문경력관		계	3																			
나군	소	계	3																			
	전문경력관		3																			
별정	직	계	3				3	3														
6급상당	소	계	2				2	2														
	별정		2				2	2														
7급상당	소	계	1				1	1														
	별정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계	급	직	렬	지역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항만해양과	새만금에너지과	일자리정책과	산업혁신과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항만혁신국계	문화관광국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계	소	행	행정·기술	행정·사회복지																				
합			계	135	23	18	22	19	24	29					105	18	21	19	30	17								
정		무	직	계																								
차관(급)	소		계																									
	정		무																									
일		반	직	계	135	23	18	22	19	24	29				102	18	21	19	27	17								
3급	소		계																									
	행		정																									
4급	소		계	1	1										1	1												
	행		정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		계	6	1	1	1	1	1	1					5	1	1	1	1	1								
	행		정	3	1	1	1								2	1			1									
	시		설																									
	행정·사회복지																											
	행정·시설														2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6급	소		계	33	5	5	6	5	6	6					24	5	4	4	7	4								
	행		정	19	5	5	6	1	2						5	2	2		1									
	세		무																									
	전		산																									

계	급	직	렬	경제환경안전보건																	
				경제	환경	안전	보건	농업	해양	수산	문화	관광	도시	체육	위생	행정					
6급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공업·보건·환경																				
7급	소 계	41	6	3	5	6	10	11		25	6	4	3	4	8						
	행정	19	5	3	5	1	5			12	4	3	1	2	2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1				1							
	농지																				
	해양수산	8						8													
	환경																				
	시설	3				1	2			2	1	1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3				3															
	행정·농지																				
행정·해양수산	3					1	2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계	급	직	업	경제항만혁신구계										위	생	행	정	과		
				경제항만혁신구계	소상공인지원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수산진흥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키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7급		행정·시설	3	1				2			1			1						
		전산·방송통신																		
		공업·환경																		
		공업·시설									2	2								
		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35	8	5	6	5	5	6		27	2	10	7	4	4				
		행정	19	7	3	6	1	2			9	1	7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2				2													
		녹지																		
		해양수산	6						6											
		보건									3					3				
		환경																		
		시설									7		2	4	1					
		방송통신																		
		방재안전																		
		운전									1					1				
		건축운영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해양수산	3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합			계	183	39	25	33	13	24	25	24	183	34	21	26	27	23	28	24
정		무	직	계															
차관(급)	소		계																
	정		무																
일		반	직	계	183	39	25	33	13	24	25	183	34	21	26	27	23	28	24
3급	소		계																
	행		정																
4급	소		계	1	1							1	1						
	행		정																
	행	정	· 기	1	1							1	1						
5급	소		계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		정									1						1	
	시		설									1		1					
	행	정	· 사	4	1	1	1	1											
	행	정	· 시									5	1	1		1	1		1
	행	정	· 방																
	행	정	· 공	2					1	1									
	행	정	· 공																
	행	정	· 녹	1							1								
	행	정	· 해																
	행	정	· 보																
6급	소		계	39	6	6	6	4	6	5	6	42	7	5	5	7	5	7	6
	행		정	1						1		5	1					4	
	세		무																
	전		산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계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6급		사	회	복	지	2	2																
		공			업																		
		녹			지	2					2												
		해	양	수	산																		
		시			설									14		4	2	3	2		3		
		시	설	관	리	1					1												
		운			전																		
		기	계	운	영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복	지	18	4	5	5	4										
		행	정	·	사	서																	
		행	정	·	공	업	1		1					1			1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행	정	·	환	경	2				1	1											
		행	정	·	시	설								16	5	1	1	3	3	1	2		
		행	정	·	학	예	연	구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공	업	·	환	경	3				3												
		공	업	·	시	설								1	1								
		농	업	·	시	설								1			1						
		녹	지	·	시	설	2					2											
		보	건	·	식	품	위	생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2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6급		행정·공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식품위생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7급	소	계	50	7	6	8	3	11	8	7			46	9	6	8	7	4	6	6		
	행	정	11		1	3	2	2	2	1			13	3	2	3	1	1	2	1		
	세	무																				
	전	산																				
	사	회	4	2		2																
	공	업	1						1				2		2							
	녹	지	4							4												
	해	양																				
	환	경	6						5	1												
	시	설											25	3	4	3	6	2	2	5		
	방	송											2	2								
	시	설	1							1												
	운	전																				
	기	계	1							1												
	선	박																				
	행	정																				
	행	정												1						1		
	행	정	14	5	5	3	1															
	행	정																				
	행	정	1								1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2							1	1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복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행정·시설		1							1	3	1				1	1			
		행정·학예연구																			
		전산·방송통신																			
		공업·환경		4					3	1											
		공업·시설																			
		식품위생·위생																			
		행정·식품위생·위생																			
		보건·식품위생·위생																			
		보건·의료기술·간호																			
8급	소	계		39	4	7	11	2	3	6	6	52	6	7	7	9	8	9	6		
	행	정		5		2	2			1		7			1		1	4	1		
	세	무																			
	전	산										1								1	
	사	회	복	지	6	1	1	4													
	공		업		2					1	1	5			3	2					
	녹		지		4																
	해	양	수	산																	
	보		건		1						1										
	환		경		2					1	1										
	시		설		2			1				22	1	6	1	4	5	1	4		
	방	송	통	신																	
	방	재	안	전									1	1							
	운		전		2						1	1	3		2			1			
	건	축	운	영																	
	행	정	·	세																	
	행	정	·	전																	
	행	정	·	사	회	복	지						1			1					
	행	정	·	사	서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규계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8급		행정·보건																						
		행정·시설												7	1	1			1	2	2			
		세무·전산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재안전												1	1									
		식품위생·위생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9급	소계		47	20	5	7	3	3	5	4				35	10	2	5	3	5	5	5			
	행정		7	2	3	2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공업													2	1						1			
	녹지		2							2														
	해양수산																							
	환경		4					2	2															
	시설		1						1					19	4	2	3	3	3			4		
	방송통신																							
	방재안전													2	2									
	시설관리													1						1				
	운전		1			1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6	1		1				3	1		
	행정·사회복지		24	18		5	1																	
	행정·공업													1	1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복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9급	행정 · 녹지			2							2											
	행정 · 해양수산																					
	행정 · 보건			1						1												
	행정 · 식품위생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2	2																	
	행정 · 방송통신																					
	보건 · 식품위생																					
	식품위생 · 위생			1						1												
전문경력관																						
나	군	소																				
		전문경력관																				
별정직																						
6급	상	소																				
		별정																				
7급	상	소																				
		별정																				

계급	직렬	합계	보건소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9급	행정·농업	2				2	1	1																			
	행정·보건	1	1	1																							
연구직계		1				1				1																	
연구사	소계	1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1																	
지도직계		28				28			19	9																	
지도관	소계	2				2			1	1																	
	농촌지도	2				2			1	1																	
지도사	소계	26				26			18	8																	
	농촌지도	26				26			18	8																	
전문경력관계		1				1				1																	
나군	소계	1				1				1																	
	전문경력관	1				1				1																	

계	급	직	렬	합	계	수	도	하	수	시	예	시	박	차	차																								
																수	도	하	수	시	예	시	박	차	차														
						도	도	수	수	관	제	관	관	관	관																								
6급		공	업	·	환	경	·	시	설	2																													
7급		소	계		47	23	15	8		20	5	11	4		4	4																							
		행	정		15	7	6	1		5	2		3		3	3																							
		사	서		7					7		7																											
		공	업		13	8	6	2		4	1	2	1		1	1																							
		시	설		4	4	2	2																															
		기	계	운	영	1					1	1																											
		행	정	·	사	서	2				2		2																										
		행	정	·	공	업	1				1	1																											
		행	정	·	보	건	1		1		1																												
		행	정	·	시	설	1		1		1																												
		공	업	·	환	경	1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1																											
8급		소	계		36	18	10	8		13	5	5	3		5	5																							
		행	정		8	2	2			5	3		2		1	1																							
		세	무		1										1	1																							
		사	서		4					4		4																											
		공	업		7	6	3	3		1	1																												
		시	설		6	6	4	2																															
		전	기	운	영	1	1	1																															
		기	계	운	영	3	1		1		2	1	1																										
		행	정	·	세	무	2								2	2																							
		행	정	·	공	업	3		1		1			1	1	1																							
		공	업	·	환	경	1		1		1																												
9급		소	계		34	10	8	2		21	3	12	6		3	3																							
		행	정		2										2	2																							
		전	산		1					1		1																											
		사	서		9					9		9																											
		공	업		4	1	1			3	2		1																										
		환	경		2	1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읍, 면]

계	급	직	렬	합	읍		면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계	계	계										
				계	계	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합				계	398	14	14	139	13	13	13	13	16	13	13	13	19	13
일				반	직	계	398	14	14	139	13	13	13	13	16	13	13	13
5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계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계	1													
	행정·사회복지·간호			계	1													
	행정·사회복지·환경			계	1													
	행정·사회복지·시설			계	4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계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계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계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계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계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계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계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계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계	1													
	행정·공업·농업·녹지			계	2			2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계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계	2	1	1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계	1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계	1			1				1						
6급	소			계	70	3	3	31	3	3	3	3	3	3	3	4	3	
	행			정	12													
	사			회	복	지	6											

계	급	직	렬	합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계	읍																구
6급	행정 · 세 무	2																				
	행정 · 사회 복지	22	1	1		8	1	1	1	1	1	1		1	1		1					
	행정 · 농 업	15	1	1		12	2	2	1	1	1	2	1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1					1					
	행정 · 공 업 · 농 업	1				1				1												
	행정 · 공 업 · 환 경	1																				
	행정 · 농 업 · 녹 지	1				1									1							
	행정 · 농 업 · 시 설	1				1					1											
	행정 · 해양수산 · 시 설	1				1											1					
	행정 · 세 무 · 농 업 · 녹 지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 · 공 업 · 농 업 · 시 설	1	1	1																		
	행정 · 농 업 · 녹 지 · 시 설	1				1			1													
행정 · 농 업 · 해양수산 · 시 설	1				1																1	
7급	소 계	98	4	4		35	3	2	3	3	6	3	3	3	3	5	4					
	행 정	33	1	1		6	1			1	2	1					1					
	사 회 복 지	32	1	1		11	1	1	1	1	1	1	1	1	1	2	1					
	해 양 수 산	2				2										2						
	행 정 · 세 무	5																				
	행 정 · 사 회 복 지	8																				
	행 정 · 농 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1					
	행 정 · 녹 지	2				2								1	1							
	행 정 · 시 설	5	1	1		4	1		1		1										1	
8급	소 계	86	4	4		26	2	4	2	2	2	2	2	2	3	4	3					
	행 정	36	2	2		7	1	2	1			1	1	1								
	사 회 복 지	16	1	1		4				1	1				1		1					
	해 양 수 산	2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18				2									1	1						
	행 정 · 농 업	10	1	1		7	1	1	1		1		1			1	1					

계	급	직	렬	합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계	읍														
				계	계	읍	계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8급		행	정 · 시	4			4		1		1		1					1			
9급		소	계	117	2	2	37	4	3	4	4	4	4	4	4	3	5	2			
		행	정	43	1	1	12	2	1	2	2	1	1	1	1	1					
		사	회 복 지	63	1	1	18	2	2	2	1	3	2	2	1	1	2				
		농	업	1			1								1						
		해	양 수 산	2			2										2				
		사	무 운 영	3			3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행	정 · 해 양 수 산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동]

계	급	직	렬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합			계	245	11	13	12	12	11	14	18	13	12	11	24	16	21	21	19	17		
일		반	직	계	245	11	13	12	11	14	18	13	12	11	24	16	21	21	19	17		
5급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농지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간호·시설																					
	행정·농업·환경·시설																					
6급	소		계	36	2	2	2	2	2	2	2	2	2	2	3	2	3	3	3	2		
	행		정	12	1	1	1	1	1	1	1	1	1			1	1	1				
	사		회	6		1				1		1			1		1	1				

계	급	직	별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6급	행정 · 세무	2													1				1			
	행정 · 사회복지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 농업	2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세무·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7급	소 계	59	3	4	3	3	2	3	4	3	2	2	2	5	5	5	6	5	4			
	행 정	26	2	1	1	2	1	2	1	2	2	2	1	1	2	1	3	2	2			
	사 회 복 지	20	1	1		1	1		2	1			1	3	3	2	1	2	1			
	해 양 수 산																					
	행 정 · 세 무	5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8		2	2			1								1	1		1			
	행 정 · 농 업																					
	행 정 · 녹 지																					
	행 정 · 시 설																					
8급	소 계	56	2	3	3	2	2	4	4	2	3	3	5	4	5	5	5	5	4			
	행 정	27	2	1	1	1	2	2	2	1		2	2	2	2	2	3	3	1			
	사 회 복 지	11		2	2			2	1		1					1	1		1			
	해 양 수 산																					
	행 정 · 사 회 복 지	16				1			1	1	2	1	2	2	2	2	1	2	1			
	행 정 · 농 업	2												1					1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1	2	3	룡	성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8급	행정·시설																				
9급	소계	78	3	3	3	4	4	4	7	5	4	3	10	4	7	6	5	6			
	행정	30	1	2	2	2	1	1	3	1	2	2	4		2	2	2	3			
	사회복지	44	2	1	1	2	3	3	4	4	2	1	5	3	4	3	3	3			
	농업																				
	해양수산																				
	사무운영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해양수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구							신								
		합계	자치행정국	행정지원원	열린민원원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합계	자치행정국	행정지원원	열린민원원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합	계	827	203	47	18	133	27	104	18	837	203	47	18	135	29	105	19
일	반 직 계	820	199	43	18	133	27	101	18	830	199	43	18	135	29	102	19
6급	소 계	187	44	10	3	33	6	24	4	188	44	10	3	33	6	24	4
	행정·사회복지	18	1							19	1						
	공업·보건·환경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2							
7급	소 계	245	73	20	6	41	11	25	3	246	73	20	6	41	11	25	3
	시설	31				3		2	1	32				3		2	1
8급	소 계	207	52	9	6	35	6	27	7	210	52	9	6	35	6	27	7
	행정	70	27	4	5	19		9	1	69	26	3	5	19		9	1
	복지	3								4							
	시설	30						7	4	31						7	4
	행정·사회복지	13								14							
	행정·간호									1	1	1					
9급	소 계	140	20	1	2	17	3	19	3	145	20	1	2	19	5	20	4
	행정	20	4		1	6				21	5		2	6			
	시설	24				3		2	2	26				3		3	3
	사무운영	18	2		1	3		6	1	17	1			3		6	1
	행정·사회복지	23								24							
	행정·해양수산									2				2	2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구							신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산림복지과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산림복지과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
합	계	179	30	25	23	180	26	22	23	183	33	25	24	183	27	23	24
일	반 직 계	179	30	25	23	180	26	22	23	183	33	25	24	183	27	23	24
6급	소 계	38	5	5	6	42	7	5	6	39	6	5	6	42	7	5	6
	행정 · 사회 복지	17	4							18	5						
	공업 · 보건 · 환경	1		1													
	행정 · 공업 · 보건 · 환경	1		1						2		2					
7급	소 계	50	8	8	7	45	6	4	6	50	8	8	7	46	7	4	6
	시 설					24	5	2	5					25	6	2	5
8급	소 계	37	10	6	5	51	9	7	6	39	11	6	6	52	9	8	6
	행 정	5	2	1		7		1	1	5	2	1		7		1	1
	녹 지	3			3					4			4				
	시 설	2	1		1	21	4	4	4	2	1		1	22	4	5	4
	행 정 · 사회 복지	12	3			1	1			13	4			1	1		
	행 정 · 간 호																
9급	소 계	46	6	5	4	34	3	5	4	47	7	5	4	35	3	5	5
	행 정	7	2			1				7	2			1			
	시 설	1		1		18	3	3	3	1		1		19	3	3	4
	사 무 운 영					6			1					6			1
	행 정 · 사회 복지	23	4							24	5						
	행 정 · 해양 수 산																

[별표2]

[직속기관]

		구								신							
		합 계	보 건 소 계	보 건 행 정 과	농 업 기 술 센 터 계	농 업 축 산 과	먹 거 리 정 책 과	농 촌 지 원 과	기 술 보 급 과	합 계	보 건 소 계	보 건 행 정 과	농 업 기 술 센 터 계	농 업 축 산 과	먹 거 리 정 책 과	농 촌 지 원 과	기 술 보 급 과
합 계		201	112	73	89	27	21	19	22	204	113	74	91	27	20	25	19
일 반 직 계		169	112	73	57	27	20	6	4	174	113	74	61	27	20	6	8
6급	소 계	35	18	12	17	6	6	4	1	37	18	12	19	6	5	4	4
	농업·농촌지도	7			7	1	2	3	1	6			6	1	1	3	1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3			3				3
7급	소 계	58	41	31	17	11	5		1	57	41	31	16	11	4		1
	농업	9			9	5	3		1	8			8	5	3		
	행정·농업	3			3	2	1			3			3	2			1
8급	소 계	51	43	24	8	4	2	1	1	55	44	25	11	4	4	1	2
	농업	2			2	1			1	3			3	1			2
	간호	14	14	3						15	15	4					
	행정·농업	2			2	1	1			4			4	1	3		
연구사	농업연구	1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1
지도 직 계		30			30		1	13	16	28			28			19	9
지도사	소 계	28			28		1	12	15	26			26			18	8
	농촌지도	28			28		1	12	15	26			26			18	8

[별표3]

[사업소]

		구						신					
		합		시	시			합		시	시		
		계		설	립			계		관	도		
				리	서					리	서		
				사	관					사	관		
				업	리					업	리		
				소	과					소	과		
				계						계			
합	계	150		68	34					152		70	36
일	반 직 계	150		68	34					152		70	36
7급	소 계	46		19	10					47		20	11
	행 정 사 서	1		1	1					2		2	2
9급	소 계	33		20	11					34		21	12
	행 정 사 서									1		1	1

[별표4]

[의회사무국]

		구						신					
		합		의	의			합		의	의		
		계		회	회			계		사	사		
				사	사					무	무		
				무	무					국	국		
				국	국					계	계		
합	계	25		25	25					31		31	31
일	반 직 계	25		25	25					31		31	31
7급	소 계	7		7	7					13		13	13
	행 정	5		5	5					8		8	8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 농 업									2		2	2

[별표5]

[읍면동]

		구						신									
		합	면	읍	도	동	흥	나	합	면	읍	도	동	흥	나		
		계	계	면		계	동	동	계	계	면		계	동	동		
합		계	401	140	20		247	15	22	398		139	19		245	14	21
일 반 직		계	401	140	20		247	15	22	398		139	19		245	14	21
8급	소	계	87	26	4		57	5	5	86		26	4		56	4	5
	행 정 사 회 복 지		19	2	1		17	1	1	18		2	1		16		1
9급	소	계	119	38	6		79	4	7	117		37	5		78	4	6
	행 정		44	12	1		31	1	3	43		12	1		30	1	2
	사 회 복 지		64	19	2		44	3	3	63		18	1		44	3	3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399 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정책계장**·**주민여권계장**·**가족관계등록계장**·**생활민원계장**” 을 “**민원정책계장**·**주민여권계장**·**가족관계등록계장**”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은파공원관리계장**” 을 “**관광시설계장**”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복지계장**” 을 “**아동복지계장, 아동보호계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정책계장**·**보육지원계장**·**아동복지계장**·**청소년계장**” 을 “**아동정책계장**·**보육지원계장**·**아동복지계장**·**아동보호계장**·**청소년계장**” 으로 한다.

제30조의1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0조의1)의 제목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농업계장”을 각각 “농산계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기획생산계장, 식품가공계장, 식량산업계장”을 “식품가공계장, 친환경식량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량산업계장”을 “친환경식량계장”으로, “기획생산계장·식품가공계장”을 “식품가공계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시험연구계장”을 “농업생물계장, 기획생산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연구계장은 각각”을 “소득작목계장, 농업생물계장은 각각 지방농업주사,”로, “소득작목계장”을 “기획생산계장”으로, “지방농촌지도사·지방농업연구사”를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열린민원과) ① (생 략) ② <u>민원정책계장 · 주민여권계장 · 가족 관계등록계장 · 생활민원계장</u>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p> <p>제21조(관광진흥과) ① (생 략) ② <u>관광마케팅계장 · 축제계장</u>은 지방행정 주사로, <u>관광개발계장</u>은 지방시설주사로, <u>은파공원관리계장</u>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 시설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한다.</p> <p>제27조(아동청소년과) ①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정책계장, 보육지원계장, <u>아동복지계 장</u>, 드림스타트계장, 청소년계장을 둔다. ② <u>아동정책계장 · 보육지원계장 · 아동 복지계장 · 청소년계장</u>은 각각 지방행 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드 림스타트계장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 사회복지주사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 방간호주사로 한다.</p> <p>① · ② (생 략)</p> <p>제41조(농업축산과) ① 농업축산과에 농 정기획계장, 농촌활력계장, <u>친환경농 업계장</u>, 축산계장, 동물방역계장, 동물 복지계장을 둔다. ② 농정기획계장은 지방행정주사 · 지 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p>	<p>제13조(열린민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u>민원정책계장 · 주민여권계장 · 가족 관계등록계장</u>----- -----.</p> <p>제21조(관광진흥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 ----- <u>광 시설계장</u>----- -----.</p> <p>제27조(아동청소년과) ① ----- ----- <u>아동복지계장</u>, <u>아동보호계장</u>-----. ② <u>아동정책계장 · 보육지원계장 · 아동 복지계장 · 아동보호계장 · 청소년계장</u> ----- ----- ----- ----- -.</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농업축산과) ① ----- ----- <u>농산계장</u>----- ----- ----- -.</p> <p>② ----- -----</p>

농촌활력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
 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친환
경농업계장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축산계장·동물방
 역계장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
 방수의주사로, 동물복지계장은 지방행
 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제41조의2(먹거리정책과) ① 먹거리정책
 과에 먹거리정책계장, 공공급식지원계
 장, 로컬푸드계장, 기획생산계장, 식품
가공계장, 식량산업계장을 둔다.

② 먹거리정책계장, 로컬푸드계장, 식
 량산업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공공급식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
 방농촌지도사로, 기획생산계장·식품
가공계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
 촌지도사로 한다.

제43조(기술보급과) ① 기술보급과에 작
 물환경계장, 소득작목계장, 시험연구
계장을 둔다.

② 작물환경계장, 시험연구계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소득작목계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
농촌지도사·지방농업연구사로 한다.

 ----- 농산계장-----

제41조의2(먹거리정책과) ① -----

 ----- 식품가공계장, 친환경식량계장
 -----.

② ----- 친환경
식량계장-----

 ----- 식
품가공계장-----
 -----.

제43조(기술보급과) ① -----
 ----- 농업생물계장, 기
획생산계장-----.

② ----- 소득작목계장, 농업생물
계장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
기획생산계장----- 지
방농촌지도사-----.

군산시 고시 제2021-17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59호(2018.05.11.)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 나. 명 칭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²)	
대로2-11	990m	30m	전북고111 ('95.6.29.)	706m	30m	19,388m ²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8. 05. 11. ~ 2021. 12. 31.
 - (변경) 2018. 05. 11. ~ 2022.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7.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79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4건, 폐지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1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녀로 6-172 (내초동)		20211213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내초폐수처리장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226-45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619 (내초동)	20211213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멀매길 19-2		20211213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070528	동마산의 옛 고유 지명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04-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멀매길 19-2	20211213		20070528	동마산의 옛 고유 지명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1-26, 2-43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안2길 27 (조촌동)	20211209		20180109	활차림 휘어져 흐르는 나루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3길 6 (미룡동)		20211209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65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3길 6 (미룡동)	20211209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916-1, 948-5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347 (산북동)	2021120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560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북길 23-2 (신관동)	20211208		20100125	지명에 따른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881, 882-2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길 89 (신관동)	2021120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229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최호장군길 104	20211206		20070528	최호장군 묘지소재마을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7-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12-12 (미장동)	20211206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17-10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2길 18 (개정동)	20211206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곡리 319-2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등동1길 38	20211206		20100125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9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1로 44 (조촌동)	20211206		20180109	활차림 휘어져 흐르는 나루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1길 5		20211202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28 (비응도동)		20211202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100125	군정산업단지에서 가능 넓고 중심이 되는 도로로 지역명칭에서 인용	하나 에너지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0-12, 30-15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28 (비응도동)	20211202	건물신축	20100125	군정산업단지에서 가능 넓고 중심이 되는 도로로 지역명칭에서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1길 5	20211202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36-4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1길 35	20211203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거사길 6 (개사동)		20211201	건물번호 폐지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76-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37	20211201	건물신축	20070528	산곡리 산곡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9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3로 30 (조촌동)	20211201	건물신축	20180109	활차림 휘어져 흐르는 나루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672-10	전라북도 군산시 거사길 6 (개사동)	202112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77-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오곡길 29-22	20211206	건물 신축	20070528	지명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208-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해곡길 54	20211130		20100125	나포리 해곡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182-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452	20211129	참고 건물번호 부여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681, 679-3, 681-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수림로 201	20211126		20100125	생태관광에 수림평야 존재로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101-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임피중길 25	20211126		20100125	서수리 임피중학교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44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52-12	20211126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군산시 고시 제2021-18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3350 일원(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나. 명 칭 : 서군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부지면적 : 34,795㎡
 - 나. 건축규모
 - 당초 : 4동/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5,181.65㎡, 연면적 7,568.49㎡
 - 변경 : 4동/지하1층~지상3층, 건축면적 5,088.90㎡, 연면적 9,006.45㎡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1단계 : 축구장 (인가고시일 ~ 2021. 12. 31.)
 - 2단계 : 복합체육센터 (인가고시일 ~ 2023.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실음생략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14호 (2021. 12. 01.)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월명유람선(군산시 비응로 6)
- ③ 허가목적 : 유선접안시설 운영(부잔교)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39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897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05호 (2021. 12. 01.)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박택봉(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3-1)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7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23호 (2021. 12. 01.)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이정근외1(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5)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99-4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88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20호 (2021. 12. 01.)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종승(군산시 옥도면 장자도1길 73)
- ③ 허가목적 : 수상레저도교 운영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26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07호 (2019. 11. 17.)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박덕구(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87)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36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112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84호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로 지정·고시된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사본을 군산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8일

I.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 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79,374	감)234	79,140	전북고시-29호 (12.2.17)

※ 행복주택 건립사업 면적(6-2획지) : 기정 11,454㎡ (행복주택 : 10,842㎡, 도로 : 612㎡)
 변경 11,199㎡ (행복주택 : 10,553㎡, 도로 : 646㎡)

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현지개량방식 및 공동주택건설방식(행복주택 건립 예정지)

4. 사업시행예정자 : “변경없음”

- 군산시장(현지개량방식)
 전북개발공사장(공동주택건설방식,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2011 ~ 2014. 12(현지개발방식)
- 2017 ~ 2022. 03(공동주택건설방식,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합계	현지개발용지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공동이용시설용지	비고	
				계	도로	소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경로당
면적 (㎡)	기정	79,374	47,802	10,842	20,475	9,900	765	2,477	7,333	255	
	변경	감)234	증)21	감)289	증)34	증)34	-	-	-	-	
	변경후	79,140	47,823	10,553	20,509	9,934	765	2,477	7,333	255	
구성비(%)	100.0	60.5	13.3	25.9	12.6	1.0	3.1	9.2	0.3		

※ 변경사유 : 행복주택 준공을 위한 진출입로(정비기반시설) 폭원 변경 및 행복주택부지 경계 조정(일부 부지체척 및 편입)에 따른 획지 변경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90	8~13	집산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변경	소로	2	1090	8~13.5	집산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526 (405)	명산동 18-1 중 1-3	오룡동 834-79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293 (95)	오룡동 823-1 중 2-3	오룡동 소 3-35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173 (173)	오룡동 938 소 2-31	금광동 159-44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92 (92)	금광동 157-53 소 2-36	오룡동 소 2-31	일반 도로		군산고 210 ('96.6.1)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148 (108)	신평동 998-9 대 3-2	오룡동 834-79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정	소로	3	474	6	국지도로	38 (38)	금광동 170-10 대 3-2	금광동 157-2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기정	소로	3	475	6	국지도로	32 (32)	금광동 170-36 대 3-2	금광동 170-6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기정	소로	3	476	6	국지도로	60 (60)	명산동 21-11 중 3-4	금광동 156-6 소 3-33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090	소로2-1090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B = 8m → 8~13.5m	· 행복주택 준공을 위한 진출입로 폭원 변경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7	주차장	오룡동 931-5번지 일원	1,972	-	1,972	전북고시-29호 ('12.2.17)	
기정	86	주차장	명산동 20-8번지 일원	505	-	505	전북고시-229호 ('13.10.4)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공공공지	금광동 157-63번지 일원	7,333	-	7,333	전북고시-29호 ('12.2.17)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공원	소공원	금광동 156-57번지 일원	765	-	765	전북고시-29호 ('12.2.17)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경로당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로당 ①	군산시 오룡동 834-73번지 일원	255	-	255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 ·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

9.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설치연장(m) 또는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소로2-31	605(278)	-	605(278)	• 변경없음
		소로2-36	526(405)	-	526(405)	• 변경없음
		소로2-39	293(95)	-	293(95)	• 변경없음
		소로3-33	173(173)	-	173(173)	• 변경없음
		소로3-34	92(92)	-	92(92)	• 변경없음
		소로3-35	148(108)	-	148(108)	• 변경없음
		소로3-474	38(38)	-	38(38)	• 변경없음
		소로3-475	32(32)	-	32(32)	• 변경없음
		소로3-476	60(60)	-	60(60)	• 변경없음
		소 계	1,967(1,281)	-	1,967(1,281)	• 도로 9개 노선
	주차장	67	1,972	-	1,972	• 변경없음
		86	505	-	505	• 변경없음
		소 계	2,477	-	2,477	•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11	7,333	-	7,333	• 변경없음
		소 계	7,333	-	7,333	• 공공공지 1개소
	소공원	9	765	-	765	• 변경없음
		소 계	765	-	765	• 소공원 1개소

※ ()는 금광지구내 편입 연장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은 존치하고, 기반시설용지에 편입된 건축물은 철거이주로 계획하며,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력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공동주택(행복주택) 사업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 분	대상 건축물(호)			적용기준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682	-	682	-
존치/개량대상	495	-	495	현지개량
철거대상	187	-	187	6-2획지(공동주택 건립부지)에 포함된 건축물

※ 철거대상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내용이며, 소규모 부속 건축물 등은 제외함

11. 지구단위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34	금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79,374	감)234	79,140	

- 변경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의 명칭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제척(2개소) : 234m ²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행복주택부지 남측) 경계부 정형화 및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9,140	-	79,14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3,571	-	63,571	80.4	주거용지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569	-	15,569	19.6	상업용지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1	방화 지구	금광동 156-48번지 일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60,000 (15,569)	전북고시-136호 (‘87.10.31)	

■ 주거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1-2 3-2 5-1 6-1 7-1 8-1 9-1 10-1 11-2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허용용도	- 제1호(단독주택) - 제2호(공동주택)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종교시설) - 제7호(판매시설) - 제9호(의료시설)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2호(수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 - 제14호(업무시설) - 제18호(창고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 제24호(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6-2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기준)	허용용도	- 제2호(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법령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 인위적인 절·성토 지양으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에 맞는 용수 공급 •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 주차장 등 공공공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방지	• 건축물 개량과 홍수 시를 대비한 우·오수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요소 제거 • 기존의 구역 내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도로계획고를 인접대지 지반고에 맞춰서 배수가 원활 하도록 조성 •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
수 재 해	• 본 정비구역의 입지특성상 비교적 안전한 평탄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포함

14.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현 황	·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금광초교, 월명초교) 및 중학교 1개소(군산중), 고등학교 1개소(군산기계공고), 대학교 1개소(서해대학)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1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전용면적(㎡)	세대수	구성비(%)	비 고
-	-	130	100.0	
A - TYPE	21A	46	35.4	
B - TYPE	29A	40	30.8	
C - TYPE	36A	44	33.8	

※ 행복주택 건립 규모 및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따름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현 주민의 생활은 일부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형적인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상을 보이고 있고, 유희 노동인력을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 시 주민고용 등을 통해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함

17.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 신설되는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공동주택 건설시 우선 공급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함

18.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계획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

가. 공동주택(행복주택) 건립 부지 시행자 무상양여분 총괄

- 기정(소유권 이전 완료)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 고
		소 계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교육감	군산시		
필지수	73	51	21	1	29	22	
면적(㎡)	11,454	8,741	4,213	165	4,363	2,713	
구성비(%)	100.0	76.3	36.8	1.4	38.1	23.7	

※ 공유토지 소유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로 계산함

- 금회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 고
		소 계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교육감	군산시		
필지수	2	2	-	-	2	-	
면적(㎡)	5	5	-	-	5	-	
구성비	100.0	100.0	0.0	0.0	100.0	0.0	

※ 금회 포함된 기획재정부 토지 1필지(20㎡)는 별도 유상매입추진함

나. 공동주택(행복주택) 건립 부지 지자체 무상귀속분 총괄

구 분	수 량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로	1개소	612	증) 34	646	·행복주택 준공을 위한 진출입로(소로2-1090호선) 폭원 변경

II. 관 련 도 면 : “별 첨”

1.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6. 지형도면고시도

군산시 고시 제2021-18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2월 10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 나. 명 칭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창고 및 부대시설) 증축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분	시 설 명	결정면적 (㎡)	대지면적 (㎡)	건축계획			비고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32,548.7	32,548.7	당초 9동 변경없음	12,186.97	14,353.4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서해로 259
 - 나. 성 명 : (주)엔아이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고시일 ~ 2021. 12. 31.

- 변경 : 고시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소룡동	1662	잡종지	32,548.7	32,548.7	(주)엔아이*	소룡동 1662	

군산시 고시 2021-188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공람·공고 조서

-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내역 (km²)

연번	행정명	변경 전 (2020.12)			변경 후 (2021.12)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동지역	99.48	96.94	97.4%	99.91	98.55	98.6%
2	옥구읍	38.33	35.92	93.7%	38.33	35.92	93.7%
3	옥산면	16.72	16.72	100.0%	16.74	16.74	100.0%
4	회현면	38.32	37.53	97.9%	38.32	37.57	98.0%
5	임피면	21.93	21.93	100.0%	21.93	21.93	100.0%
6	서수면	24.22	24.22	100.0%	24.24	24.24	100.0%
7	대야면	37.85	37.85	100.0%	37.85	37.85	100.0%
8	개정면	17.16	17.16	100.0%	17.18	17.18	100.0%
9	성산면	27.20	27.20	100.0%	27.21	27.20	100.0%
10	나포면	31.02	31.02	100.0%	31.03	31.02	100.0%
11	옥도면	23.52	20.58	87.5%	23.56	20.62	87.5%
12	옥서면	20.78	20.73	99.7%	20.81	20.75	99.7%
합계		396.54	387.80	97.8%	397.10	389.57	98.1%

○ 가축사육제한지역 세부내역

(㎡)

행정명	전체면적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		주거 및 시설 200m이내		주거 및 시설 300m이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동지역	99,914,454.27	23,225,481.91	23.2%	26,906,310.69	26.9%	35,199,759.86	35.2%
옥구읍	38,327,381.61	307,118.58	0.8%	19,627,484.52	51.2%	24,112,066.20	62.9%
옥산면	16,737,194.79	218,145.98	1.3%	11,197,000.86	66.9%	14,239,054.86	85.1%
회현면	38,318,722.38	-	0.0%	14,899,116.63	38.9%	19,178,814.07	50.1%
임피면	21,930,279.87	443,804.84	2.0%	13,583,105.31	61.9%	17,609,662.49	80.3%
서수면	24,240,741.64	-	0.0%	14,312,831.23	59.0%	18,277,717.57	75.4%
대야면	37,846,438.67	752,080.72	2.0%	18,399,990.73	48.6%	26,012,707.77	68.7%
개정면	17,181,557.74	1,223,050.72	7.1%	10,475,033.54	61.0%	12,807,763.25	74.5%
성산면	27,205,587.70	-	0.0%	17,300,434.49	63.6%	21,057,128.30	77.4%
나포면	31,025,750.90	-	0.0%	13,732,678.06	44.3%	18,346,014.49	59.1%
옥도면	23,560,387.35	-	0.0%	5,747,294.35	24.4%	8,086,916.21	34.3%
옥서면	20,814,699.40	951.28	0.0%	7,437,505.34	35.7%	9,181,711.48	44.1%
합계	397,103,196.32	26,170,634.03	6.6%	173,618,785.75	43.7%	224,109,316.55	56.4%

행정명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주거 및 시설 500m이내		주거 및 시설 1,000m이내		주거 및 시설 2,000m이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동지역	47,062,234.45	47.1%	65,097,381.64	65.2%	75,320,195.38	75.4%	98,545,675.08	98.6%
옥구읍	27,277,799.75	71.2%	30,456,433.09	79.5%	35,614,789.94	92.9%	35,921,908.21	93.7%
옥산면	16,338,099.36	97.6%	16,519,044.88	98.7%	16,519,044.86	98.7%	16,737,190.82	100.0%
회현면	24,518,280.06	64.0%	30,734,432.22	80.2%	37,570,577.76	98.0%	37,570,577.60	98.0%
임피면	20,610,922.59	94.0%	21,486,122.17	98.0%	21,486,122.06	98.0%	21,929,926.81	100.0%
서수면	21,719,990.06	89.6%	24,240,659.12	100.0%	24,240,659.12	100.0%	24,240,659.13	100.0%
대야면	34,313,616.26	90.7%	36,991,522.58	97.7%	37,093,251.94	98.0%	37,845,332.31	100.0%
개정면	15,260,382.64	88.8%	15,958,501.87	92.9%	15,958,501.84	92.9%	17,181,552.43	100.0%
성산면	24,162,350.93	88.8%	26,167,330.88	96.2%	27,203,488.11	100.0%	27,203,488.10	100.0%
나포면	23,840,746.15	76.8%	28,691,401.63	92.5%	31,024,144.49	100.0%	31,024,144.60	100.0%
옥도면	12,078,375.29	51.3%	17,427,701.78	74.0%	20,618,794.15	87.5%	20,618,794.11	87.5%
옥서면	11,881,874.40	57.1%	16,735,574.29	80.4%	20,753,080.14	99.7%	20,754,031.35	99.7%
합계	279,064,671.94	70.3%	330,506,106.15	83.2%	363,402,649.79	91.5%	389,573,280.55	98.1%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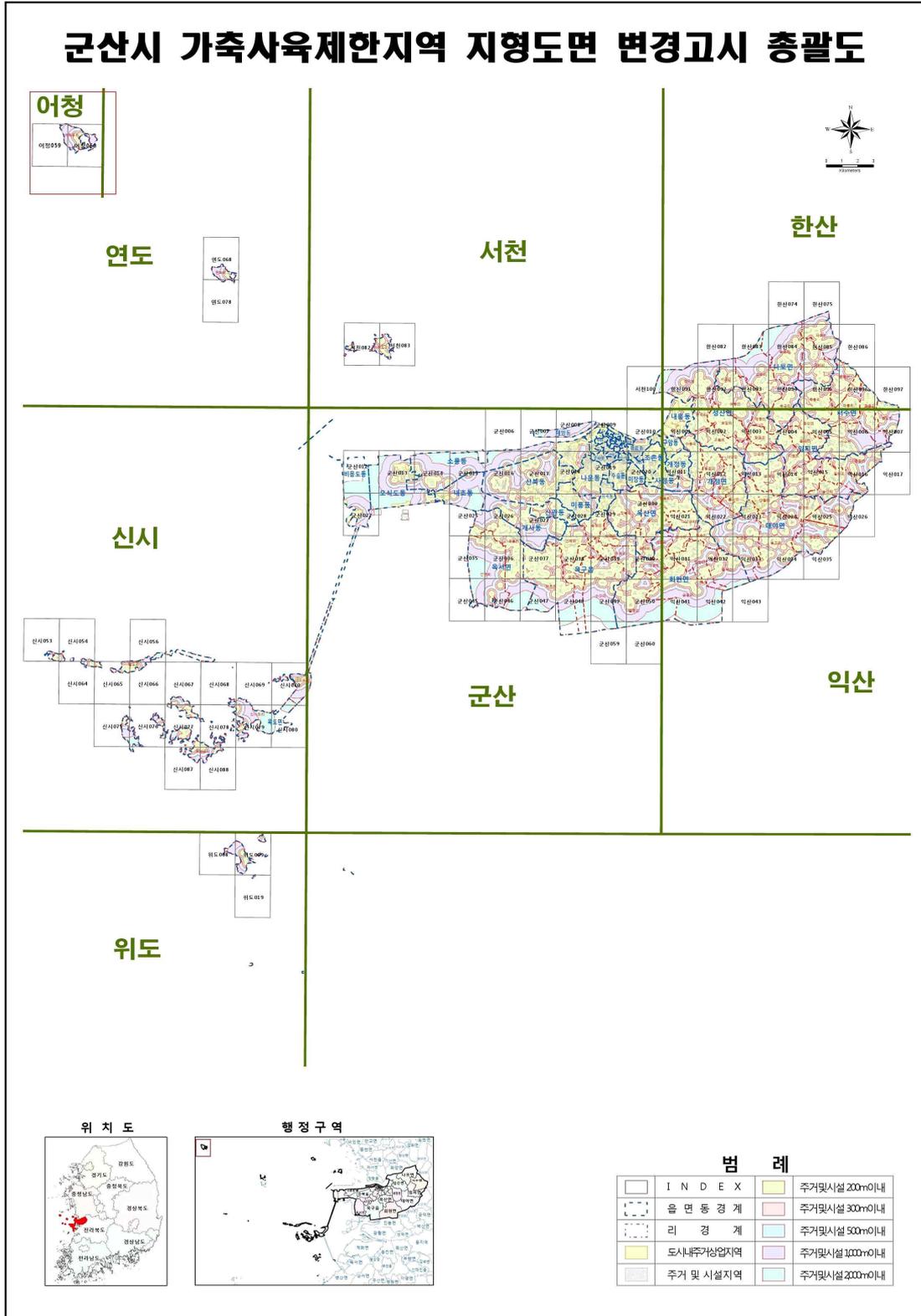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열람 가능.

-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4. 이해관계인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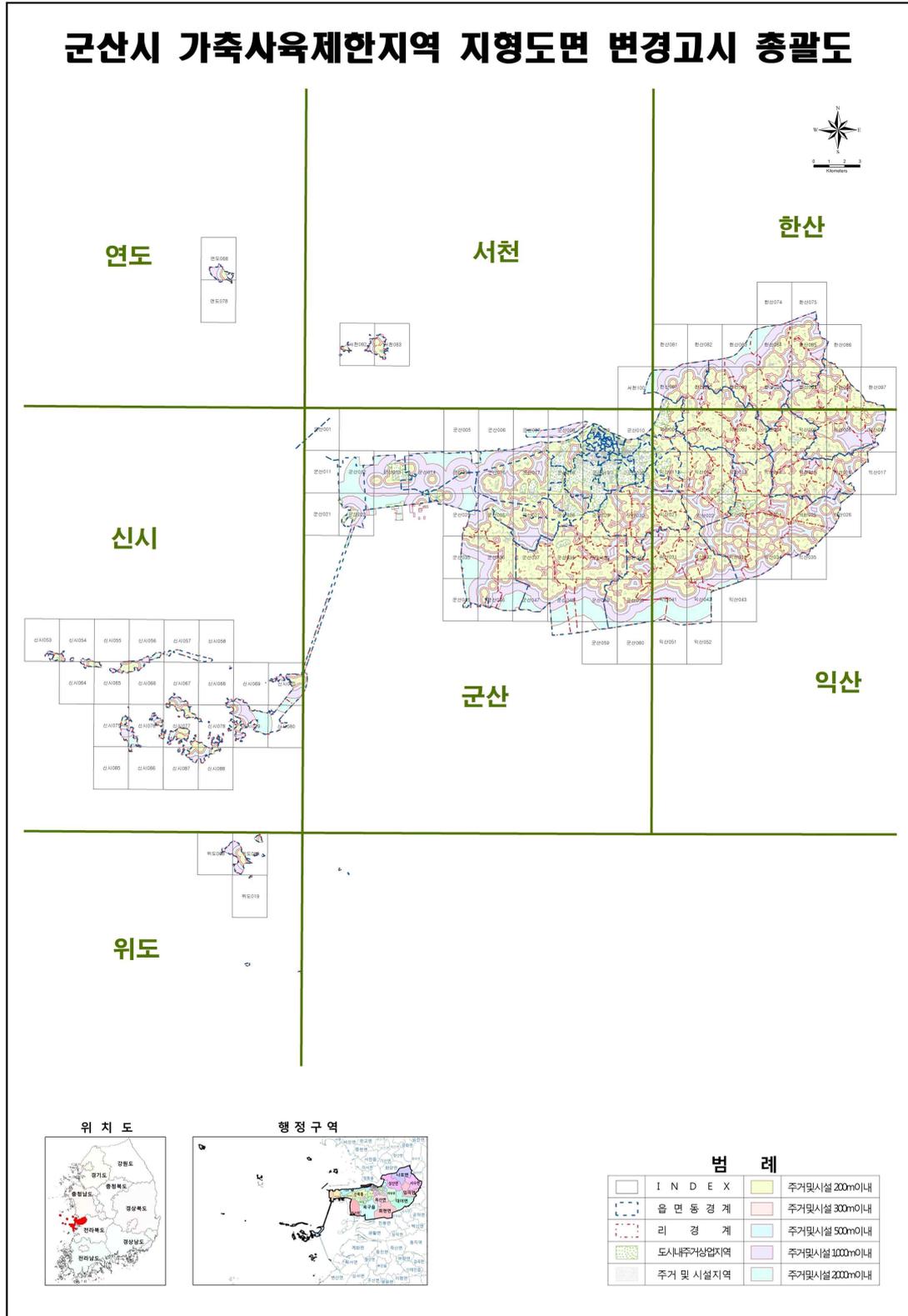
5. 총괄도

○ 기정



6. 총괄도

○ 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1-1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5-00013호 (2021. 12. 13.)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처
(군산시 구암3.1로 91-5(경암동))
- ③ 허가목적 : 취배수 구조물 및 폼펜스 운영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경암동 590번지 2호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694m²
- ⑥ 허가기간 : 2022. 3. 5. ~ 2027. 3. 4.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9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8-00005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수산진흥과)(군산시 시청로 17)
- ③ 허가목적 : 개야공원 조성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산3-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108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30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상래(군산시 옥도면 야미도4길 68)
- ③ 허가목적 : 어구야적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39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14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9-00005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유미(군산시 하나운로 20, 105동 307호)
- ③ 허가목적 :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06번지 3호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4m²
- ⑥ 허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6-00001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종승(군산시 옥도면 장자도1길 73)
- ③ 허가목적 : 수상레저활동 위한 부잔교설치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18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00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03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유철근(군산시 옥도면 개야도4길 20-1)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603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02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유종관(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47-1)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558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8-00002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삼성종합물류(군산시 공항로 262)
- ③ 허가목적 : 수상레저계류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005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08호 (2021. 12. 10.)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신동환(군산시 옥도면 연도1길 16-4)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산8-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m²
- ⑥ 승인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94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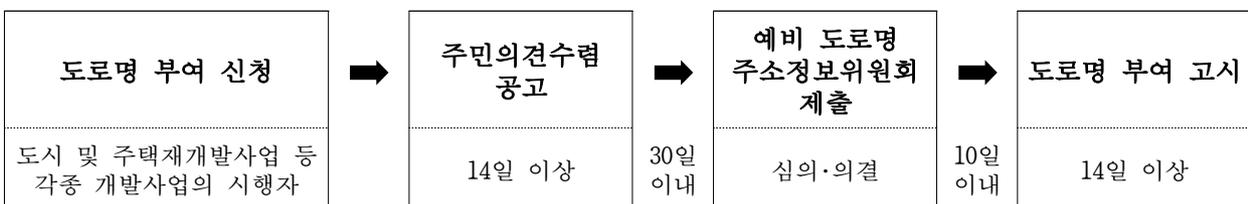
1.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31건

도로명	도로명 부여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2021. 12. 15. ~ 12. 29.(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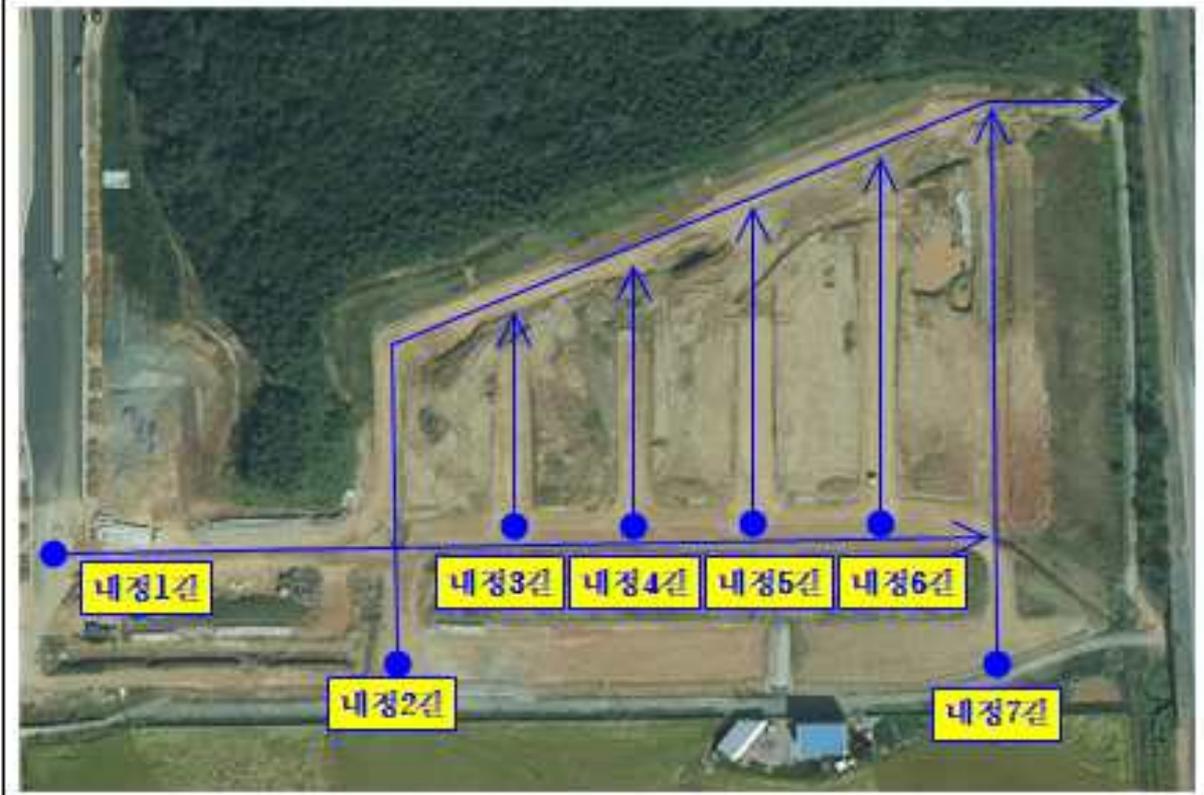
3.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도면<신역세권 2단계>



상세도면 <1번>



상세도면 <2번>



상세도면 <3번>



상세도면 <4번>



상세도면 <5번>



도로명 부여 조서<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 구역	도로명	위계	시작점	끝지점	도로폭 (m)	도로 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1	내흥동	선사로	로	내정동 352-2	내정동 367-10	15	234	20	1	2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	내흥동	내정1길	길	내정동 산211-1	내정동 544-2	12	295	20	1	3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3	내흥동	내정2길	길	내정동 607-4	내정동 562-3	8	347	20	1	36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4	내흥동	내정3길	길	내정동 547-3	내정동 531-1	8	80	20	1	1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5	내흥동	내정4길	길	내정동 547-3	내정동 539-5	8	98	20	1	1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6	내흥동	내정5길	길	내정동 547-3	내정동 539-8	8	115	20	1	12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7	내흥동	내정6길	길	내정동 545	내정동 539-1	8	132	20	1	14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8	내흥동	내정7길	길	내정동 544-2	내정동 562-2	8	183	20	1	20	내정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9	내흥동	패총5길	길	내정동 산200-1	내정동 493-2	10	235	20	1	24	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0	내흥동	패총6길	길	내정동 494-3	내정동 494-12	8	235	20	1	24	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1	내흥동	패총7길	길	내정동 515	내정동 505-2	8	235	20	1	24	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2	내흥동	패총8길	길	내정동 928	내정동 494-13	12	114	20	1	12	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3	내흥동	패총9길	길	내정동 928	내정동 505-2	8	114	20	1	12	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도로명 부여 조사<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 구역	도로명	위계	시작점	끝지점	도로폭 (m)	도로 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14	내흥동	역전2길	길	내정동 928	내정동 819-1	12	366	20	1	38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5	내흥동	역전3길	길	내정동 825-3	내정동 806-9	12	244	20	1	26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6	내흥동	역전4길	길	내정동 819-1	내정동 477-5	12	205	20	1	22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7	내흥동	역전5길	길	내정동 471-13	내정동 464-2	12	143	20	1	16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18	내흥동	선사1길	길	내정동 산90-1	내정동 388-4	10	520	20	1	5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19	내흥동	선사2길	길	내정동 451	내정동 388-4	10	392	20	1	4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0	내흥동	선사3길	길	내정동 455	내정동 452-1	8	62	20	1	8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1	내흥동	선사4길	길	내정동 369-2	내정동 산84	8	62	20	1	8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2	내흥동	선사5길	길	내정동 367-6	내정동 370-13	10	125	20	1	14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3	내흥동	선사6길	길	내정동 367-12	내정동 372-4	8	62	20	1	8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4	내흥동	선사7길	길	내정동 367-10	내정동 372-3	10	97	20	1	1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5	내흥동	선사8길	길	내정동 367-14	내정동 844-3	9	84	20	1	10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26	내흥동	선사9길	길	내정동 376-1	내정동 374-1	9	62	20	1	8	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부여

도로명 부여 조서<신역세권 2단계>

순번	관할 구역	도로명	위계	시작점	끝지점	도로폭 (m)	도로 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27	내흥동	사옥안1길	길	내정동 313-5	내정동 289-6	10	351	20	1	36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28	내흥동	사옥안2길	길	내정동 312	내정동 312-3	10	305	20	1	32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29	내흥동	사옥안3길	길	내정동 312	내정동 319-1	10	341	20	1	36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30	내흥동	사옥안4길	길	내정동 314-4	내정동 320-20	9	153	20	1	16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31	내흥동	사옥안5길	길	내정동 308	내정동 315	9	114	20	1	12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로 부여

군산시 공고 제2021-243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옥도 214호선 농어촌도로(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내용	사업기간
농어촌도로 사업 [옥도 214호선 농어촌도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산시장 (위·수탁자: 한국농어촌 공사 군산지사장)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2-40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개설 L=380m, B=8~15m)	2021.10. ~ 2023.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분할 전 지번)
토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0번지 외 2필지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토지 등 세부내용은 열람장소 및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열람가능

- 1) 상기 토지는 고시문상의 토지분할 전 지번이며, 향후 손실보상은 분할 후 편입되는 지번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편입면적은 토지조서 참조)
-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12.9. ~ 2021.12.23.(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시청 향만해양과(063-454-2813) 또는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063-440-5721),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군산시청 향만해양과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21. 12월 이후(추후 개별 협의통지 예정 및 공고기간에도 보상가능)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통지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감정평가 완료)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 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열람장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063-440-5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	옥도	무녀도	220	220-4	염	39,975	4,390	김*수	군산시 수송동로 36, 101동 503호				
2	군산	옥도	무녀도	222-10	222-39	구	482	64	김*수	군산시 수송동로 36, 101동 503호				
									최*성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13-9				
									국세청					
3	군산	옥도	무녀도	222-20	222-40	구	8,645	237	김*수	군산시 수송동로 36, 101동 503호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군산지점)	근저당권	
									최*성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13-9				
									기재부					

군산시 공고 제2021-2490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등 매입
-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71필지 172,760㎡ 및 지상 물건
- 라.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
-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1. 12. 15.~12. 29.(14일간)
- 나.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및 문화예술과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다.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라. 이의신청 :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계(☎ 063-454-3312/3314)
- 마. 이의신청방법 :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3.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나.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야 함

라.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 통지

마.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청구에 의한 계좌지급

4.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312/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예정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토지 지분		권리관계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계	문화재 지정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지분	면적		
1-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0	전	3,663	3,663	3,663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0-1	전	236	236	236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2	전	331	331	331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3	전	823	823	823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	전	2,291	2,291	-	2,29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5	전	49	49	-	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4	전	33	33	-	3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5	전	519	519	-	51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7-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6	전	785	785	-	785	김**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1. 근저당 채무자:유**(전주시덕진 구금암2길***) 근저당권자:김**(전주시 덕진구가리내로***)	
7-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6-2	전	125	125	-	1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7-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6-2	전	173	173	-	1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8-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8	전	501	501	-	501	조**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				
8-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8-1	전	163	163	-	16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2	전	830	830	830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3	전	436	436	436	-	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				
1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	전	833	833	833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5	전	1,217	1,217	1,217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6	전	813	813	813	-	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7길 **	290/813			
								권**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	407/8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16/813			
1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7	전	1,061	1,061	1,061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8	전	529	529	529	-	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1/2		1. 근저당 채무자:이**(전주시덕 진구우아동3가***) 근저당권자:전북은행 공동담보:전북군산시 옥도면선유도리139,선 유도리140 2.근저당 채무자:박**(군산시옥 도면두리도리**) 근저당권자:권**(서울 특별시구로구경인로6 5길***) 공동담보:군산시옥도 면선유도리140 3.지상권 지상권자:전북은행	
								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5길 **	1/2			
1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9	전	522	522	522	-	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1/2		1. 근저당 채무자:이**(전주시덕 진구우아동3가***) 공동담보:전북군산시 옥도면선유도리138,선 유도리140 2.지상권 지상권자:전북은행	
								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5길 **	1/2			
1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0	전	317	317	317	-	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1/2		1. 근저당 채무자: 이**(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 근저당권자:전북은행 공동담보:전북군산시 옥도면선유도리138, 선 유도리139 2.근저당 채무자:박**(군산시옥 도면두리도리**) 근저당권자:권**(서울 특별시구로구경인로6 5길***) 공동담보:군산시옥도 면선유도리138 3.지상권 지상권자:전북은행	
								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5길 **	1/2			
1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1	전	893	893	893	-	최**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1/2		1. 근저당 채무자:이**(전주시완 산구서신동***) 근저당권자:전북은행 2.근저당 채무자:정**(군산시옥 도면선유복길**) 근저당권자:최**(전주 시덕진구가리내로***) 3.지상권 지상권자:전북은행	
								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5길 **	1/2			
1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2	전	509	509	509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2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4	임	1,488	1,488	1,488	-	송**	주소불명	135135/ 1486485			
								김**	주소불명	135135/ 1486485			
								임**	주소불명	135135/ 1486485			
								김**	주소불명	135135/ 1486485			
								임**	주소불명	135135/ 1486485			
								김**	의정부시 의정부동 ***	3146/ 1486485			
								이**	주소불명	135135/ 1486485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 시장로8번길 **	13365/ 1486485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23760/ 1486485			
								이**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	4095/ 1486485			
								이**	군산시 상나운1길 **	2730/ 1486485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24버너길 **	2730/ 1486485			
								이**	군산시 나운3길 *	2730/ 1486485			
								박**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	122850/ 148648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00269/ 1486485											
2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5	임	496	496	496	-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1/45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1/45			
								임**	익산시 무왕로20길 **	1/45			
								임**	군산시 장전안길*	1/45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길 **	1/45			
								임**	군산시 옥도면 명사십리1길 **	5/45			
								박**	군산시 옥구군 میم성읍 선유도리 **	5/4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0/45			
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	전	1,055	1,055	-	1,0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2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	전	1,779	1,779	-	1,77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2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1	전	331	331	331	-	선유도리				
2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2	전	172	172	172	-	선유도리				
2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3	전	1,494	1,494	1,494	-	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			
2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4	전	764	764	764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2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5	전	1,266	1,266	1,266	-	홍**	군산시 진포2길 **	1/4		
								홍**	군산시 미장13길 **	1/4		
								홍**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4		
2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	전	661	661	-	66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1	전	96	96	-	96	김**	정읍시 신태인읍 서태길 *			
3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7	전	843	843	-	8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8	전	493	493	493	-	김**	정읍시 신태인읍 서태길 *			
3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9	전	575	575	575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	전	258	258	258	-	홍**	군산시 진포2길 **	2/4		
								홍**	군산시 미장13길 **	1/4		
								홍**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		
3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1	전	628	628	628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1	전	774	774	774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3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2	전	1,779	1,779	-	1,779	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 신송로82번길 *	1/2		
								권**	광명시 성체로 **	1/2		
3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3	전	605	605	-	605	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			
3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	전	1,500	1,500	-	1,500	박**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			

4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1	전	239	239	-	239	권**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			
4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	전	124	124	-	12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1	전	331	331	-	331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			1. 근저당 채무자:임**(군산시옥도면선유3길**) 근저당권자: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공동담보: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94-4 2. 지상권 지상권자: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4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2	전	21	21	-	2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3	전	1,160	1,160	-	1,16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6	전	595	595	-	5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7	전	549	549	-	54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8	전	731	731	-	731	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44 ***	1/4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3/44		
4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9	전	569	569	-	569	조**	주소불명			
49-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9	전	595	595	-	595	조**	부안군 계화면 창북중앙길 **			
49-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9-1	전	139	139	-	13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5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8	전	387	387	387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9	전	301	301	301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2-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0	전	375	375	-	37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
5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0-1	전	15	15	-	15	노**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20. ***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53-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1	전	795	795	-	7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3-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1-1	전	25	25	-	2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5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2	대	208	208	-	20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3	전	1,425	1425	1,425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6	전	417	417	-	417	송**	군산시 대학로 ***				
5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7	전	185	185	185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1/2			
								박**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	1/2			
5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8	전	1,488	1488	1,488	-	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 ***				
5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9	대	255	255	255	-	선유도리					
6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0	전	486	486	486	-	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44 ***	1/44			
								박**	군산시 부곡1길 **	1/8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859/880			
6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2	도	202	202	202	-	국 (건설부)	세종시 도음6로 11				
6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3	도	433	433	433	-	국 (건설부)	세종시 도음6로 11				
6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0	도	678	678	678	-	국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음6로 11				
6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5	임	6,040	6,040	6,040	-	국 (산림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65-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임	108,934	108,934	108,934	-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139120800/ 6886479600	1. 근저당 채무자:임**(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 근저당권자: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공동담보;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산23-2,선유도리산23-3,선유도리산23-4		
								고**	군산시 경암2길 **	139120800/ 6886479600			
								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89, ***	927472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9번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공포2로 25,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06,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월명로 ***	45139731/ 6886479600			
								윤**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2길 ***	139120800/ 688647960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5867494269/ 6886479600			

65-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2	임	5	5	5	-	고**	군산시 경암2길 44, ***	139120800/ 6886479600		1. 근저당 채무자:임인택(군산시 옥도면선유도리19) 근저당권자:군산시수 산업협동조합 공동담보:군산시옥도 면선유도리산23-1,선 유도리산23-3,선유도 리산23-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772520069/ 6886479600		
								김**	군산시 칠성7길 56, ***	231868000/ 6886479600		
								노**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	231868000/ 6886479600		
								박**	군산시 나운동 ***	538491000/ 6886479600		
								윤**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2길 ***	139120800/ 6886479600		
								이**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	2318680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06,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9번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공포2로 25, ***	92747200/ 6886479600		
								65-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3	임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4772520069/ 6886479600										
김**	군산시 칠성7길 56, ***	231868000/ 6886479600										
노**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	231868000/ 6886479600										
박**	군산시 나운동 ***	538491000/ 6886479600										
윤**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2길 ***	139120800/ 6886479600										
이**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	2318680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06,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9번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공포2로 25, ***	92747200/ 6886479600										
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89,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월명로 ***	45139731/ 6886479600										

65-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4	임	2.150	2.150	2.150	-	고**	군산시 경암2길 44. ***	139120800/ 6886479600		1. 근저당 채무자:임**(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 근저당권자: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공동담보: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산23-2,선유도리산23-3,선유도리산23-1	
								김**	군산시 남수송3길 **	46373600/ 6886479600			
								김**	군산시 칠성7길 56. ***	231868000/ 6886479600			
								김**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	695604000/ 6886479600			
								노**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	231868000/ 6886479600			
								박**	군산시 동흥남길 9. ***	695604000/ 6886479600			
								박**	군산시 나운동 ***	538491000/ 6886479600			
								오**	군산시 월명동 ***	650464269/ 6886479600			
								윤**	군산시 옥도면	139120800/ 6886479600			
								이**	군산시 오룡재안길 **	92747200/ 6886479600			
								이**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2번길 **	92747200/ 6886479600			
								이**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1길 **	92747200/ 6886479600			
								이**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	626043600/ 6886479600			
								이**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	231868000/ 6886479600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잔지로 164.***	92747200/ 6886479600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 25길 ***	927472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정로 206. ***	92747200/ 6886479600			
								임**	익산시 무왕로20길 **	139120800/ 6886479600			
								임**	군산시 장전안길*	1391208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1391208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길 **	1391208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	139120800/ 688647960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번길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공포2로 25. ***	92747200/ 6886479600											
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89. ***	92747200/ 6886479600											
임**	군산시 월명로 ***	45139731/ 6886479600											
전**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2길 ***	695604000/ 6886479600											
조**	군산시 남수송3길 **	46373600/ 6886479600											
최**	광명시 양지로 7. ***	157113000/ 6886479600											
6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2	임	1.785	1.785	1.785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67-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6	전	211	211	211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67-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6-1	전	1	1	1	-	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 ***				군산시 항만해양과 보상
6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7	전	704	704	704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6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4	전	390	390	390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7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5	전	152	152	152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7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1	전	106	106	106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71필지			172,760	152,915	19,845						